

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현황

□ 사업근거

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- 「2011 장애인복지 종합시책」 (행정1부시장방침, 2011.5.20)
- 「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」 (시장방침, 2011.11.3)
-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

□ 추진경위

- '06.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
- '07. 5월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
- '07.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
- '11. 7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확대 시행
- '11.10월 장애인활동보조 →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·확대
- '13. 1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급 → 장애1~2급)
- '13. 7월 장애아동 시간 확대(80→100시간) 및 1급 탈락자 지원(40시간)
- '14. 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(180→200시간)
- '15. 2월 서울시 자체 24시간 지원 시행(100명)
- '15. 6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~2급 → 1~3급)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만 6세~65세 미만의 1~3급의 중증장애인 (소득기준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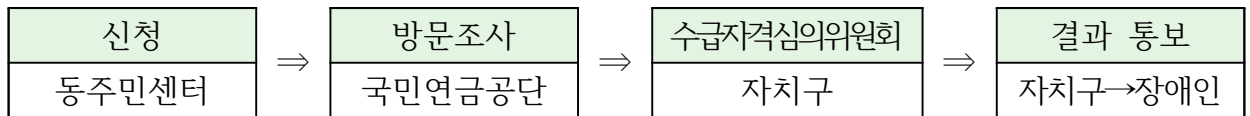
- 국고보조사업 : 1~3급 장애인으로서 '인정조사표'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
- 시비추가사업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국고지원 탈락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, 시설 퇴소자

○ '16년 대상인원 : 월15,135명

(단위 : 명)
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국고 보조	7,538	11,920	10,435	11,600	12,037	12,875
시비 추가	1,557	1,917	2,295	1,854	2,014	2,260
합계	9,095	13,837	12,730	13,454	14,051	15,135

○ 대상자 선정절차



○ 지원급여 :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~742시간(국고48~392, 시비40~350)

- 기본급여 :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
- 추가급여 : 수급자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
- 시 추가급여 :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,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~220점 미만인 자, 시설퇴소 장애인

기본급여(국고보조)			추가급여(국고보조)		서울시 추가급여							
구분	등급	월 급여액(시간)	지원 분류	월 급여액(시간)	지원 분류	월급여액(시간)						
장애 1~3급	1등급 (380점~470점)	1,063천원 (118시간)	①최중증(400점 이상) 독거가구	2,464 (274시간)	+	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로 24시간지원 선정자	3,150천원 (350시간)					
	2등급 (320점~379점)	852천원 (94시간)	②중증(380~399점) 독거가구	720 (80시간)				+	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인가구	1,800천원 (200시간)		
	3등급 (260점~319점)	642천원 (71시간)	③기타(380점 미만)독거가구	180 (20시간)							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와상 사지마비 1인 가구	1,080천원 (120시간)
			④최중증(400점 이상) 취약가구	2,464 (274시간)								
4등급 (220점~259점)	430천원 (48시간)	⑤중증(380~399점) 취약가구	720 (80시간)	⑩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·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	657 (72시간)	장애통합(인정점수 200점~220점)	360천원 (40시간)					
		⑥기타(380점 이하) 취약가구	180 (20시간)					시설퇴소자 (적격자 심의선발)	270천원 (30시간)			
		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(6개월)	720 (80시간)									
		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(6개월)	180 (20시간)									
⑨학교에 다니는 경우	91 (10시간)											
			⑩직장에 다니는 경우	360 (40시간)								
			⑪가족(실질적 보호자) 등의 결혼, 출산, 임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	180 (20시간)								

*취약가구 :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~2급 장애인,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

○ **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단가**

구분	서비스 제공자	서비스 내용	단가(시간, 회)
활동보조	활동보조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체활동 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: 청소,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사회활동 지원 : 등하교,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간 : 9,000원 22시이후, 6시이전, 공휴일 : 13,500원
방문목욕	요양보호사	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	65,410원~72,540원
방문간호	간호사 등	간호, 진료보조, 영양상담, 구강위생 등	32,630원~49,250원

○ **본인부담금**

- 국고보조 : 등급 및 소득수준별 차등부과(기초수급자 무료, 차상위자 정액 2만원)
 - . 기본급여 : 급여액의 6~15% (20,000원~102,200원)
 - . 추가급여 : 급여액의 2~ 5% (1,800원~123,200원)
- 시비추가지원 : 본인부담금 없음

○ **'16년 사업예산 : 159,144백만원**

- 국고보조사업 : 135,156백만원 (국:시:구비 50%:35.5%:14.5%)
 - * 국비 78,991백만원, 시비 56,165백만원 (구비 별도 22,826백만원)
- 시비추가사업 : 23,987백만원 (시비 100%)

□ **'15년 추진실적**

- 누적 이용인원 : 168,619명 (월평균 14,051명)
 - 국고보조 : 144,450명, 시비추가 : 24,169명
- 24시간 활동지원 100명 지원 시작 : '15. 2월

<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인원 및 금액 >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지원 인원	76,788	96,088	105,780	124,432	140,579	156,276	168,619
지원 금액(구비포함)	48,911	57,333	71,956	96,274	116,943	138,842	174,279